

• 새로운 연수 • 튼튼한 연수 • 따뜻한 연수



연수구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723 ☎ 749-7403 / FAX 749-7399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부록 제837호 2014. 12. 8.(월)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4-92호(도로명주소 고시) 1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98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99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3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996호(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96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998호(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 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07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1015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109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1016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13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1017호(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 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16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1034호(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23

【훈 령】

-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014-259호(인천광역시연수구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일부개정 발령)192

| | | | | | | | |
|---|--|--|--|--|--|--|--|
| 회 | | | | | | | |
| 람 | | | | | | |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08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16번길 61-10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40-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16번길 61-10 | 신축 | 2009-07-09 | 청학로의 시작지점에서 약160미터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749-7594 ~ 759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2. 0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이유

-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 거주제한기간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 및 격려일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방법을 개선하고 혼선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일 확대
 - 예우및지원 관련하여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 를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와 명절” 로 개정하여 위문 및 격려일을 확대(안 제3조)
- 보훈예우수당 지급기준 확대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거주기간 “1년이상” 에서 “3개월이상” 으로 개정하여 지급대상자 확대(안 제6조)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방법 개선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중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무상지급” 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료 지급” 으로 개정하여 기존 현물로 지급하던 방식을 개인 계좌 입금방식으로 개선(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2.1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청 복지정책과(☎749~7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월인재로 115 (동춘동)
- 연 락 처 : 전화 749-7632, FAX 749-762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를 “국가보훈대상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로 한다.

제4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4호중 “또는 행사에 ” 를 “또는 행사와 명절에” 로 한다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1년 이상 거주한” 을 “3개월이상 연수구에 거주한” 으로 한다.

제7조 “구청장에게” 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로 한다.

제12조는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②위로금은 20만원 이내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한다.

③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제4호는 삭제하고, 같은조 제5호는 제4호로 하며, 제4호 중 “봉투 무상 지급”을 “봉투료 지급”으로 한다

제13조는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 라한다.)에 주소를 둔 <u>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u></p> <p>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인 <u>천 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나라사랑정신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한다.</u></p> <p>4. <u>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u></p> <p>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u>구청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 ----- 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4. ----기념일 또는 행사와 명절 -----</p> <p>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인천 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6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u>1년이상 거주한</u>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수당의 신청)제6조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u>구청장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p> <p><u>제11조</u>(복지지원)</p> <p><u>제11조제4항</u></p> <p>제11조(복지지원)5. 구청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p> | <p>②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조(보훈예우수당 지급)----- ----- ----- -- 3개월이상 연수구에 거주한-- ----- ----- -----.</p> <p>제7조(수당의 신청)----- ----- ----- -----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p> <p>제12조(복지지원)</p> <p><삭제></p> <p>제12조(복지지원)4.----- ----- 종량제 쓰레기봉투료 지급</p>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신설></u></p> <p><u>제12조(수당의 신청)</u> <u>제13조(지급방법 등)</u> <u>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u> <u>제15조(시행규칙)</u> 부칙 이 조례는 <u>2013년1월1일부터</u> 시행한다.</p> | <p><u>제11조(사망위로금 지급)</u>①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p> <p>②위로금은 20만원 이내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한다.</p> <p>③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삭제></u> <u><삭제></u> <u>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u> <u>제14조(시행규칙)</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p> |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4.14 조례 제 579호
(전문개정) 2012.08.02 조례 제7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자·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자·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및 사료의 발굴 지원
4.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와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5.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및 소개
6.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7. 국가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와 전적지 순례비
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기타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제5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연수구에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은 매월 3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수당의 신청) 제6조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분기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제10조(보훈예우수당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연수구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② 위로금은 20만원 이내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한다.

③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
2. 구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3. 구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4. 구청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료 지급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희생자·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 4. 14 조례 제5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 제6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2012.8.2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함(안제4조)
- 공무원의 직제개편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관련 규정을 삭제함(안제10조 및 제15조)
- 응시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해 면제 할 수 있도록 함(안제12조)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구체화함(안제23조)
- 전직시험의 응시자격과 면제에 대하여 명시함(안제27조)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사전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제39조)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일부 차구 수정 및 각종 서식, 표등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2. 1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172 FAX 749-715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 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 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5항 각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 5급이상 여성공무원중 2명, 법제7조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10명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2명과 여성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에서 제5호는 삭제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2항중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한다)”를 “ 영”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중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며, 같은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응시수수료)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간의 장은 공공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응시결격사유 등)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간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4조 조문중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다음에 “연도에” 를 삽입하고, 같은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 를 “제23조제5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을 “경력경쟁임용시험” 으로 한다.

제17조중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를 “최종시험예정일부터” 로 한다.

제1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시험위원)②법제27조2항에 의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 조명을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을 “경력경쟁임용시험”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제7호서식] , [별지제8호서식] 에 의거 검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를 “(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나·다군을 포함한다)” 로 하고 , 같은 조 제2항중 “ 및 기능직” 을 삭제하고 “특별임용시험” 을 “경력경쟁임용시험” 으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3 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 2]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⑤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다.

⑨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4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는 “자격증 소지여부” 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조명 및 제1항중 “특별임용” 을 “경력경쟁임용”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중 “제18호” 를 “제8호” 로 하고, 제3호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 제2항을 삭제한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제26조 조명 및 본문 중 “ 특별임용” 을 “경력경쟁임용” 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2] 또는 [별표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3] 또는 [별표6]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⑤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 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의 조명을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32조 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3조 본문중 “특별승진대상자”를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로 한다.

제35조중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동으로 임용함을”을 “동으로 전보임용함을”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4의2, 별표5, 별표5의2, 별표5의3, 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표7의3, 별표7의4,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0의2, 별표11, 별표13, 별표15, 별지제1호서식, 별지7호서식, 별지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23조제3항, 제5항 및 제27조제1항 관련)

| 직렬 | 계급 | | 연구관·연구사 |
|------|------|----------------------------|--|
| | 직렬 | 직류 | |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
| | | 미술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
| | | 국악 |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
| | | 국어 |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
| 편사연구 | 편사 | 역사학을 전공한 자 |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 |
| 공업연구 | 기계 | 기계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
| | | 전기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
| | 전자 | 전자 | |
| | | 금속 |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
| | 섬유 | 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 |
| | 화학 | 화학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
| | | 산업경영 |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
| | 물리 |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 |

| 직렬 | 계급 | | 연구관·연구사 |
|------|------|----|---|
| | 직렬 | 직류 | |
| 농업연구 | 작 |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자 |
| | 농업환경 |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자 |
| | 작물보호 |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
| | 농업경영 | |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
| | 잠업곤충 | |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
| | 원 |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
| | 생명유전 |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
| | 농촌생활 | |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
| | 축 | 산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
| | 농 | 공 |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
| | 농식품 | 개발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자 |
| 녹지연구 | 임 | 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
| | 조 | 경 | |
| 수의연구 | 수 | 의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

| 직렬 | 계급 | | 연구관·연구사 |
|------------|------|----|---|
| | 직렬 | 직류 | |
| 해양수산 연구 | 해양환경 | |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
| | 수산자원 | |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
| | 수산양식 |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
| | 수산공학 | |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
| | 수산가공 | |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
| | 수산경제 | |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
| 보건연구 | 의 학 |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
| | 약 학 |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
| | 공중보건 |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
| 환경연구 | 환 경 |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
| 시설연구 | 토 목 | |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
| | 건 축 | |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23조제4항, 제5항 및 제27조제1항 관련)

| 직렬 | 계급 | | 지 도 관 | 지 도 사 |
|------|-------------------------------------|--|---|--|
| | 직류 | | | |
| 농촌지도 |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 농촌생활 |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어촌지도 | 어 촌 | |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비 고 : 1. 윗표에서 “전공한 자” 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윗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24조관련)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
| | 직렬 | 직류 | | |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 |
| 전 산 | 전 산 | 전 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 |
| | | | | | | | | |
| 사 서 | 사 서 | 사 서 | 1·2급 정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 |
| 속 기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2급 | 한글속기 1·2·3급 | | | |
| 수 의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수의사 | | | | |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 한의사 | | | | | | |
| | 치 무 | 치과의사 | | | | | | |
| 약 무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
| | 약 제 | | | | | | | |
| 간 호 | 간 호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 |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 |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 | | | |
| | | | | |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
| | | | | |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 | | |
| 항 공 | 일반항공 |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
| | 조 종 |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
| | 정 비 |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 시 설 | 지 적 | | 기술사(지적)기사(지적) | 기술사(지적)기사(지적) | 기술사(지적)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
| 위 생 | 위 생 | | | 위생사 영양사 | 위생사 영양사 |
| | 사 역 | | | 영양사 |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
| 조 리 | 조 리 | | | 조리사 1급 | 조리사 1급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 간호조무사 |
| 운 전 | 운 전 | | | |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신설 2006. 2. 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의2] <신설 14. . . >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제15조제3항 관련)

| 구분 | 내용 및 기준 |
|----|---|
| 체격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
| 시력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비고 :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 기술사 |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 기사(3년), 산업기사(6년) |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 (2년) |

2. 삭제

비 고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행정 | 운수 | 산업기사 : 철도운송 |
| 전산 | 전산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공업 | 일반기계 |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
| | 농업기계 |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 기계운전 |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볼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 | 조선 | 기기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 |
| | 일반전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승강기 기능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전 자 |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p> <p>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
| | 원 자 력 |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
| | 금 속 |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
| | 야 금 |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
| | 섬 유 |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 염색</p> <p>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
| | 일반화학 | <p>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
| | 자 원 |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p> <p>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p> <p>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p> |
| 농 업 | 일반농업 |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
| | 잠 업 | <p>기사 : 생물공학</p> <p>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
| | 농 화 학 | <p>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p>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식물검역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
| | 축 산 |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 생명유전 |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 녹 지 | 조 경 | 기술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
| | 산림자원 |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 | 산림보호 |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
| | 산림이용 | 기술사 : 산림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잠수 |
| | 일반수산 |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
| | 수산제조 |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
| | 수산물검사 |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
| | 수산증식 |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어 로 |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일반선박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 | 선박항해 |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
| | 선박기관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 | 해양교통 시 설 |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능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수 질 | <p>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
| | 대 기 |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
| | 폐 기 물 |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
| 항 공 | 일반항공 | <p>기술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p>기사 : 항공</p> <p>산업기사 : 항공</p> |
| | 정 비 | |
| 시 설 | 도시계획 |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
| | 일반토목 |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농업토목 |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건 축 |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지 적 |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측 지 |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 | 교통시설 |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
| | 도시교통시설 | 기 사: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 방송통신 | 디자인 |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산업기사 : 조경 기능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
| | 통신사 |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 | 통신기술 |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전송기술 |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전자통신기술 |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 직렬 | 계급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직렬 | 직류 | | | | | |
| 행정 | 일반행정 | 법무행정 | 변호사, 변리사(4) | 변리사 | | | |
| | | 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 감정평가사 | | |
| | 국제통상 | 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7) 작업상담사 (10) | 공인노무사(3) 작업상담사(6) | 공인노무사 작업상담사1급(3) |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 직업상담사2급 |
| | | 문화홍보 | 변호사 | | | | |
| | 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 감정평가사 세무사 | | | |
| | 운수 | |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 사(9) |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 사(6) |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 사(3) |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 |
| | 감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 세무사 감정평가사 | | | |
| | 세무 | 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 세무사 | | |
| | 교육 | 교육행정 | 변호사 | | | | |

| 직렬 | 직류 | 계급 | | | | |
|------|-------|---|---|--|--------------------------------------|--------------------------------------|
|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 사회복지사 1급(3)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전 산 | 전 산 |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사 서 | 사 서 | 1급 정사서(5)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 2급 정사서(3)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공 업 | 원 자 력 |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 | |
| 농 업 | 축 산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기축인공수정사 | |
| 수 의 | 수 의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 | |
| | 일반선박 |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1급 항해사(3)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 | 선박기관 | 1급 기관사(3) |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 보 건 | 보 건 | 의사(2) 한 의사(2) 치과 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 보건교육사3급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위생사(12) 영양사(12) | 위생사(8) 영양사(8) | 위생사(5) 영양사(5) | 위생사(2) 영양사(2) | 위생사 영양사 |

| 직렬 | 계급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직류 | 직류 | | | | |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인사별리사(12) 법사서사(12) 물리치료사(12) 키패의사(12) 직업치료사(12) 법사소속직(특수) 법사소속직(일반) 간호사(5) 법사상급사1급(7) | 인사별리사(8) 의무기록사(8) 법사서사(8) 물리치료사(8) 키패의사(8) 직업치료사(8) 법사소속직(특수) 법사소속직(일반) 간호사(3) 법사상급사1급(3) | 인사별리사(5) 의무기록사(5) 법사서사(5) 물리치료사(5) 키패의사(5) 직업치료사(5) 법사소속직(일반) 법사소속직(특수) 간호사(3) 법사상급사2급(3) | 인사별리사(2) 의무기록사(2) 법사서사(2) 물리치료사(2) 키패의사(2) 직업치료사(2) 법사소속직(일반) 법사소속직(특수) 간호사(2) | 인사별리사 의무기록사 법사서사 물리치료사 키패의사 직업치료사 |
| | | 일반의무 | 의사(2) 한의사(2) | | | | |
| 약 무 | 약 무 | 치 무 | 치과의사(2) | | | | |
| | | 약 무 | 약사(7) 한약사(7) | 약사(3) 한약사(3) | 약사 한약사 | | |
| 간 호 | 간 호 | 조산사(12) 간호사(12) | 조산사(6) 간호사(6) | 조산사(3) 간호사(3) | 조산사 간호사 | |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12) 간호사(12) | 조산사(6) 간호사(6) | 조산사(3) 간호사(3) | 조산사 간호사 | | |
| 환 경 | 일반환경 | 의사(2) 수의사(7) | 수의사(3) 약사(3) | 수의사 약사 | 위생사(2) | 위생사 | |
| | 수 질 | 약사(7) |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 | | |
| | 대 기 |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 | | | | |
| | 폐 기 물 | | | | | | |
| 항 공 | 일반항공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보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 사업용조종사 항공보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 자가용조종사(3) 항공보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 자가용조종사 항공보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 |
| | 조 종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 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3) | 자가용조종사 | | |
| | 정 비 |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 |
| 시 설 | 건 축 |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 |
| | 디 자 인 | 건축사(5) | 건축사 | | | | |
| 숙 기 | 숙기 | | | 한글숙기 12급(5) | 한글숙기 123급(2) | 한글숙기 123급 | |
| 위 생 | 위생 | | | 위생사(5) 영양사(5) | 위생사(2) 영양사(2) | 위생사 영양사 | |
| | 사역 | | | 영양사(5) | 영양사(2) 오물처리사 1급(3) |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 |
| 조리 | 조리 | | | 조리사 1급(4) | 조리사 1급(2) | 조리사 1급 |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 | 간호조무사 | |
| 운전 | 운전 | | | | |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3] <신설 14.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23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 등급 | 자격기준 |
|--------------|----------|--|
| 시간선택제 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라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한시 임기제 | 5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6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7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8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9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시간선택제 임기제 | 가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한시 임기제 | 5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6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8호 |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 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 | 마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 한 시 임 기 제 | 5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6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7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8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
| | 9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3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 제3항, 제6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 직렬 | 계급 | | 연 구 관 | 연 구 사 |
|------|------|-------------------|--|---|
| | 직류 | | | |
| 공업연구 | 기 | 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
| | 전 | 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 | 전 | 자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 | 금 | 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
| | 섬 | 유 | 기술사(섬유, 의류) | 기사(섬유, 의류) |
| | 화 | 공 |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
| | 화 | 학 | | |
| | 산업경영 | |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
| 물 | 리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 |
| 농업연구 | 작 | 물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약사(7)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약사 |
| | 농업환경 |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약사(7)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5) |
| | 원 | 예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생명유전 | |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
| | 농촌생활 | |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

| 직렬 | 계급 | | 연구관 | 연구사 |
|--------|-------|----|---|--|
| | 직류 | | | |
| 농업연구 | 축산 |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
| | 농공 |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농식품개발 | |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
| 녹지연구 | 임업 | 조경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
| | 수목 | | | |
| 수의연구 | 수의 | | 기술사(축산) 수의사(7) | 기사(축산) 수의사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 |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
| | 수산자원 |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
| | 수산양식 | |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
| | 수산공학 | | 기술사(해양, 어로) |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
| | 수산가공 | |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
| | 수산경제 | |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
| 보건연구 | 의학 |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
| | 약학 | |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공중보건 | |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

| 직렬 | 계급 | | 연구관 | 연구사 |
|------|----|----|--|---|
| | 직류 | | | |
| 환경연구 | 환경 |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
| | | |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
| 시설연구 | 토목 |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 | 건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 공무원

| 직렬 | 계급 | | 지 도 관 | 지 도 사 | |
|------|----|----|--|--|--|
| | 직렬 | 직류 | | | |
| 농촌지도 | 농 | 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 | 임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
| | | 잠 | 기술사(생사) |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 |
| | | 원 | 예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 축 | 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
| | | 가 | 축 | 기술사(축산) 수의사(7) | 기사(축산) 수의사 |
| | | 농 | 촌 | 평생교육사 1급 |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
| | | 농 | 업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
| | | 농 | 업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 농 | 촌 | 생활 |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 |
| | | 어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 |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2항, 제6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직수 | | | |
| 행정 | 행정 | 수 | | |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전산 | 전산 |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서 | 사서 |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속기 | 속기 |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2급 | 한글속기 1·2·3급 |
| 공업 | 일반기계 |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
| | 농업기계 | | | | |
| | 기계운전 | |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
| | | |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 | 일반전기 |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
| | 전자 |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
| 원자력 |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 |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 | |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 | | |
| | | | 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 핵연료물질취급자 | |
| | 금속 야금 | 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 | | 금 | | | |
| | | 섬유 |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
| | 일반화공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
| 공업 | 가스 | 기술사(화공안전) |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 |
| | 자원 |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 |
| 농업 | 일반농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 잠업 | |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 |
| | 식물검역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 |
| | 농화학 | 기술사(농화학) | | | |
| | 축산 |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 기사(축산, 식품) |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 |
| 녹지 | 산림자원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
| | 산림보호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
| | 산림이용 |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 기사(산림, 임산가공) |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 |
| | 조경 |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 |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직류 | | | |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 |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설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
| | 일반수산 | | | | |
| | 수산제조 | | | | |
| | 수산증식 | | | | |
| | 어 로 | | | | |
| | 수산물검사 | | | | |
| 해양교통시설 | | | | |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 |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
| |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
| 보 건 | 보 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 위 생 | 위 생 | | 위생사 영양사 | 위생사 영양사 | 위생사 영양사 |
| | 사 역 | | 영양사 | 영양사 |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자보조기사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자보조기사 | 응급구조사2급 |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 한의사 | | | |
| | 치 무 | 치과의사 | | | |
| 약 무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 | 약 제 | | | | |
| 간 호 | 간 호 | | 간호사, 조산사 | 간호사, 조산사 |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 간호조무사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간호사, 조산사 | 간호사, 조산사 | |
| 환 경 | 일반환경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 | | |
| | | | 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 |
| 환경 | 수질 |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 |
| | | 대기 | 기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
| | | 폐기물 |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 항공 | 일반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 |
| | | 조종 |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자가용조종사 |
| | | 정비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산업기사(항공) |
| 시설 | 도시계획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 |
| | | 일반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 수도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시설 | 농업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 | 건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 |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 | | |
| | | |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지 적 |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측 지 |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교통시설 | |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도시교통 | | | | |
| | 설 계 | | | | |
| | 디자인 | |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
| 방송통신 | 통신사 | |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
| | 통신기술 | | | | |
| | 전송기술 | | | | |
| | 전자통신기술 | | | | |
| 조 리 | 조 리 | | 조리사 1급 | 조리사 1급 | |
| 운 전 | 운 전 | | |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2] <개정14.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22조의3 관련)

|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 |
|--------------|------------------------------------|---|----|--------------------------------------|------|
| | | 자격증 | 등급 | 가산비율 |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 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 |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 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 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 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신설 2006. 2.15>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22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 구 분 | 6·7급 | | 8·9급 | |
|------|---------------|---|--|---|
| | 가산대상 자 격 증 | 변호사, 법무사, 공 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 조사분석사1급, 임상 심리사1급, 임상심리 사2급 | 물류관리사, 철도교 통안전관리자직업상 담사2급, 사회조사분 석사2급 | 변호사, 법무사, 공 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 조사분석사1급, 임상 심리사1급, 물류관리 사, 철도교통안전관 리자, 직업상담사2 급, 사회조사분석사2 급, 임상심리사2급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 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 8·9급 | |
|--|----------------|-----------------|------|-----------------------|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 | | |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22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헌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행 정 | 일반행정 | - | 변 호 사 변 리 사 |
| | 법무행정 | | |
| | 재 경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 | 국제통상 | | |
| | 노 동 |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변 호 사 공인노무사 |
| | 문화홍보 | - | 변 호 사 |
| | 감 사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
| | 기업행정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
| | 운 수 | 산업기사 : 철도운송 |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
| 세 무 | 지 방 세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 변 호 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변 호 사 |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 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관금제관, 배관 | |
| | 농업기계 | | |

| | | | |
|-----|------|---|------------------------------|
| | |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p>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 |
| 공 업 | 기계운전 |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 철도교통안전관리사 |

| | | | |
|--------|--|--|---|
| 공 업 | 조 선 | <p>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 |
| | 일반전기 |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 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 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 |
| | 전 자 |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 리 기능장 : 기사 :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 산업기사 : 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 |
| | 원 자 력 |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p> | <p>기사자격증 기사비율 적용 : 원자 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 감독자,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특수, 일반), 방 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 자</p> |
| | 금 속 |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 검사, 품질관리</p> | |
| | 야 금 |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 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 |
| 섬 유 |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 | |

| | | | |
|-----|------|--|---|
| 공 업 | 일반화공 |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 |
| | 자 원 |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 기사 : 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 산업기사 : 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기능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p> | |
| 농 업 | 일반농업 |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 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 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 식</p>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
| | 잠 업 | <p>기사 : 생물관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p> | |
| | 식물검역 |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 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 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 |
| | 농 화학 | <p>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 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 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p> | |
| | 축 산 | <p>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 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 독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가축인공수 정사 |
| | 생명유전 |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 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 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

| | | | |
|------|--------------|---|--|
| 녹 지 | 산림자원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
| | 산림보호 |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 |
| | 산림이용 |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 |
| | 조 경 |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 산업기사 : 원 기 능 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 |
| | 일반수산 |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 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 |
| | 수산제조 |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 |
| | 수 산 물 검 사 |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 |
| | 수산증식 |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 |
| | 어 로 |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 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 해양교통 시 설 |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

| | | | |
|------|------|--|---|
| 보 건 | 보 건 |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p> <p>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p> <p>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기능사 : 식품가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p> <p>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p>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p>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p>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p>기술사 : 방사선관리,</p> <p>기사 : 의공</p> <p>산업기사 : 의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p> |
| 환 경 | 일반환경 | <p>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p> <p>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

| | | | |
|-----|-------|---|---|
| 환 경 | 수 질 | <p>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 <p>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p> <p>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
| | 대 기 |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 보</p> <p>기사 : 산림</p> <p>산업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p> <p>기능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p> <p>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 <p>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
| | 폐 기 물 |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 해방지</p> <p>기사 : 산림</p> <p>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p>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 <p>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
| 시 설 | 도시계획 |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
| | 일반토목 |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지</p> <p>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 농업토목 |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 | | |
|------|---|--|---------------------|
| 시 설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
| | 측지 |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
| | 교통시설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 |
| | 도시교통설계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
| 디자인 |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 |
| 방송통신 | 통신사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
| | 통신기술 |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 전송기술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 전자통신기술 |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공업연구 농촌지도 | 기계 |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 |
| | 농업기계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 공업연구 | 전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
| | 전자 |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 |

| | | | |
|------|-------|---|-----------------------------------|
| 공업연구 | 금속 |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p> | |
| | 섬유 | <p>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p> <p>기능장 : 염색</p> <p>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 |
| | 화학 | <p>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p> <p>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p> | |
| | 산업경영 |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학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p> <p>산업기사 : 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p> <p>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p> | |
| | 물리 | <p>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p> | |
| 농업연구 | 농식품개발 |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
| 농업연구 | 작물 |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립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 품질관리사 |
| 농촌지도 | 농업 | <p>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립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 |

| | | | |
|------|------|---|---|
| 농업연구 | 원예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 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 |
| 농촌지도 | 원예 |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 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 |
| 농업연구 | 농업환경 |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 기사 : 보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 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 산업기사 :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 농업 | |
| | 잡업 | 기사 : 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 |
| 농촌지도 | 잡업 |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 |
| 농업연구 | 작물보호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 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 기능사 : 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 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 생명유전 |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 자 |
| | 농촌생활 | 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평생 교육사 1급, 사회 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 급, 영양사, 위생 사 |
| 농촌지도 | 농촌생활 | 산업기사 : 섬유가공, 섬유물리, 섬유화학,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 |
| 농촌지도 | 농업경영 | | |
| 농촌지도 | 농촌사회 |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평생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

| | | | |
|--------|--------------|---|--|
| 농업연구 | 농 공 |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급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보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 농업연구 | 축 산 |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
| 농촌지도 | 축 산 |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 |
| 농지연구 | 임 업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
| 농촌지도 | 조 경 |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
| 수의연구 | 수 의 |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
| 농촌지도 | 가축위생 | 기 능 사 : 축산 |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수산자원 |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 |
| 어촌지도 | 어 촌 | | |

| | | | |
|-------------|------|---|---|
| 해양수산 연 구 | 수산양식 |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 |
| | 수산공학 |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 능 사 : 어로 | |
| | 수산가공 |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 |
| 보건연구 | 의 학 | -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 사, 한의사, 수의 사 |
| | 약 학 | -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공중보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 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 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 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 능 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 사, 수의사, 약 사, 한약사, 방사 선동위원소취급자 (특수, 일반), 방 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 사, 간호사, 조산 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작업치료 사, 위생사, 영양 사, 응급구조사 2 급 |
| 환경연구 | 환 경 | 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 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 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 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 지 기 능 장 : 지 기 사 : 산림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 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 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 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 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 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 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

| | | | |
|------|------|---|------------------------------------|
| 시설연구 | 토 목 |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농촌지도 | 농업토목 |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시설연구 | 건축 |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p>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23조제3항 관련)

| 임용예정직급 | | 2급· 연구관 지도관 | 3급· 연구관 지도관 | 4급· 연구관 지도관 | 5급· 연구관 지도관 | 6급· 연구사 지도사 | 7급· 연구사 지도사 | 8급 | 9급 |
|--------------------------------|------------------------------|-------------------------|-------------------|-------------------|-------------------|-------------------|-------------------|---------|-------|
| 직무분야 | | | | | | | | | |
| 경 찰 공 무 원 | | 치안감 | 경무관 | 총 경 | 경 정 | 경 경 감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 소 방 공 무 원 | | 소 정 방 감 | 소 방 감 | 소 방 정 | 소 방 령 | 소 방 경 위 소 방 위 | 소 방 장 | 소 방 교 | 소 방 사 |
| 군 인 | | 대 령 | 중 령 | 소 령 | 대 위 | 중 위 | 소 준 위 위 사 | 상 중 사 사 | 하 사 |
|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포함)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 교 수 (3년이상) | 교 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 임 사 강 | | | |
| |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 | | 24호봉이 상 | 16호봉이 상 | 12호봉이 상 | 11호봉이 하 | | |
|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 | | | | | | | |
|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 | | 17호봉이 상 | 11호봉이 상 | 7호봉이 상 | 6호봉이 하 | | |
|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 | | 19호봉이 상 | 13호봉이 상 | 9호봉이 상 | 8호봉이 하 | | |
| 관 사 · 검 사 | | 9호봉이 상 | 6호봉이 상 | 4호봉이 상 | | | | | |
| 기 능 직 공 무 원 | | | | | | 6급이 상 | 7급 | 8급 | 9급이 하 |
| 관 련 직 무 분 야 박사 학 위 소 자 학 위 소 자 | |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 | | | |
|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 |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 | | | 6년 | 3년 | 3년 | 3년 |

- 비 고 : 1. 윗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별표 9] <개정 96.3.26, 07.5.23>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23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직 렬 | 직 류 | 관 련 학 과 |
|------|--------------|---|
| 공 업 | 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 | 원 자 력 |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
| | 조 선 |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
| | 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 | 섬 유 |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
| | 일반화학 |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
| | 금 속 야 금 |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
| | 자 원 | 광산, 자원개발, 지질 |
| 녹 지 | 산림자원 |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
| | 산림보호 | 임업, 임학, (농)생물학 |
| | 산림이용 |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
| 농 업 | 일반농업 | 농업, 잡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
| | 축 산 |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
| 수 의 | 수 의 | 수의학 |
| 환 경 | 일반환경 |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일반수산 |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
| | 일반선박 |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
| | 선박항해 | 항해(학) |
| | 선박기관 |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
| | 수산제조 | 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
| | 수산증식 | 증식학, 수산증식 |
| | 어 로 |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
| | 수 산 물 검 사 | 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
| | 해양교통시설 |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
| 시 설 | 일반토목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
| | 건 축 | 건축(건축설비) |
| | 지 적 |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
| | 축 지 | |
| 방송통신 | 통 신 사 | |
| | 통신기술 |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
| | 전송기술 |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
| | 전자통신기술 | |
| 항 공 | 일반항공 |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
| | 조 종 | 항공운항학 |
| | 정 비 |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
| 약 무 | 약 무 | |
| | 약 제 |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
| 보 건 | 보 건 |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 직 렬 | 관 련 학 과 |
|---------|---|
| 농 촌 지 도 |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
| 어 촌 지 도 |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

[별표 10] <개정14. . .>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23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관련)

| 구분 | 계급 | 3급 | 4급 | 5급 | 6급 이하 |
|-------------|----|-----|----|----|-------|
|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 박사 | 8년 | 4년 | - | - |
| | 석사 | 12년 | 8년 | 4년 | -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개정 14. . . 3>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23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관련)

| 구분 | 계급 | · 지방연구직 · 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 · 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 · 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 지방연구직 · 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 · 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 · 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 · 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 지방연구직 · 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 · 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 · 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 · 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 연구사 및 지도사 |
|------|----|--|---|---|-------------|
| 연구경력 | 박사 | 8년 | 4년 | - | - |
| | 석사 | 12년 | 8년 | 4년 | -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27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 연 구 직 | | 기 술 직 | | |
|-------|---------|---------|---------|---------|
| 직 렬 | 직 류 | 직 렬 | 직 류 | |
| 공업연구 | 기 계 | 공 업 | 일 반 기 계 | |
| | | | 농 업 기 계 | |
| | 전 기 | | 기 계 운 전 | |
| | | | 일 반 전 기 | |
| | 전 자 | | 전 자 | |
| | 금 속 | | 금 속 | |
| | 섬 유 | | 야 금 | |
| | 화 공 | | 섬 유 | |
| | 화 학 | | 화 공 | |
| 물 리 | - | | | |
| 농업연구 | 작 물 | 농 업 | 일 반 농 업 | |
| | | | 농 화 학 | |
| | 농 업 환 경 | 농 촌 지 도 | 농 업 | |
| | | | 농 화 학 | |
| | | 작 물 보 호 | 농 촌 지 도 | 일 반 농 업 |
| | | | | 식 물 검 역 |
| | 농 업 경 영 | 농 촌 지 도 | 농 업 | |
| | | | 일 반 농 업 | |
| | 잠 업 곤 충 | 농 촌 지 도 | 농 업 경 영 | |
| | | | 잠 업 | |
| | 원 예 | 농 업 | 일 반 농 업 | |
| | | | 농 화 학 | |
| | | 농 촌 지 도 | 농 업 | |
| | | | 원 예 | |

| 연 구 직 | | 기 술 직 | |
|--------|------|-------|------|
| 직 렬 | 직 류 | 직 렬 | 직 류 |
| 농업연구 | 생명유전 | 농업 | 일반농업 |
| | | | 농화학 |
| | 농촌생활 | 농업 | 일반농업 |
| | | | 농촌사회 |
| | | 농촌생활 | |
| | 축산 | 농업 | 축산 |
| | | | 농촌지도 |
| | 농공 | 공업설 | 농업기계 |
| | | | 농업토목 |
| | | 농촌지도 | 농업기계 |
| 농업토목 | | | |
| 녹지연구 | 임업경 | 임업 | 전직류 |
| | | 농촌지도 | 임업 |
| 수의연구 | 수의 | 수의 | 수의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 환경경 | 수질 |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 | | 어촌지도 | 어촌 |
| | 수산자원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 | | 어촌지도 | 어촌 |
| | 수산양식 | 해양수산 | 수산중식 |
| | | 어촌지도 | 어촌 |
| | 수산공학 | 해양수산 | 어로 |
| | | 어촌지도 | 어촌 |
| | 수산가공 | 해양수산 | 수산제조 |
| 수산물검사 | | | |
| 어촌지도 | | 어촌 | |
| 수산경제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
| | 어촌지도 | 어촌 | |
| 보건연구 | 의학 | 의무 | 일반의무 |
| | | | 치무 |
| | 약학 | 약무 | 약제 |
| 공중보건 | 보건 | 식품위생 | 보건 |
| | | | 식품위생 |
| 환경연구 | 환경 | 환경 | 전직류 |
| 시설연구 | 토목 | 시설 | 일반토목 |
| | | | 농업토목 |
| | 건축 | | 건축 |

2. 지도직공무원

| 지 직 | 도 직 | 직 류 | 기 직 | 술 직 | 직 류 |
|---------|---------|-------------|-----------|-----------|-----|
| 농 촌 지 도 | 농 업 | | 농 업 | 일 반 농 업 | |
| | | | 농 업 연 구 | 작 물 보 호 | |
| | | | | 농 업 환 경 영 | |
| | | | | 농 업 경 영 | |
| | | | | 농 업 경 영 | |
| | 임 업 | | 농 업 연 구 | 전 직 류 | |
| | | | 농 지 연 구 | 임 업 경 | |
| | 잠 업 | | 농 업 | 잠 업 | |
| | | | 농 업 연 구 | 잠 업 곤 충 | |
| | 원 예 | | 농 업 연 구 | 원 예 | |
| | 축 산 | | 농 업 | 축 산 | |
| | | | 농 업 연 구 | 축 산 | |
| | 가 축 위 생 | | 수 의 | 수 의 | |
| | | | 수 의 연 구 | 수 의 | |
| | 농 촌 사 회 | | 농 업 연 구 | 농 촌 생 활 | |
| | 농 업 기 계 | | 공 업 | 농 업 기 계 | |
| | | | 농 업 연 구 | 농 공 | |
| | 농 업 토 목 | | 시 설 | 농 업 토 목 | |
| | | | 농 업 연 구 | 농 공 | |
| | 농 촌 생 활 | | 농 업 연 구 | 농 촌 생 활 | |
| 어 촌 지 도 | 어 촌 | 해 양 수 산 | | 일 반 수 산 | |
| | | | | 수 산 제 조 | |
| | | | | 수 산 중 식 | |
| | | | | 어 로 | |
| | | 해 양 수 산 연 구 | 수 산 물 검 사 | | |
| | | 전 직 류 | | | |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32조제2항 관련)

| 상당계급 | | 구분 | | | | |
|-------------|-----------|---------------------|------------------------------|---------------------|---------------------|---------------------|
|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일반직공무원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연구관 지도관 | 연구사 지도사 | | | |
| 경찰공무원 | | 경정 | 경감·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소방공무원 | | 소방령 지방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 소방장 지방소방장 | 소방교 지방소방교 | 소방사 지방소방사 |
| 군인 | | 대위 | 중위 | 소위 위사 준위 | 상사 중사 | 하사 |
| 군무원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국가정보원 직원 | | 5급 | 6급 기능 6급이상 | 7급 기능 7급 | 8급 기능 8급 | 9급 기능 9급이하 |
| 별정직공무원 |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임기제 공무원 | 시간 선택제 |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
| | 한시 | “5호”로 재직한 기간 | “6호”로 재직한 기간 | “7호”로 재직한 기간 | “8호”로 재직한 기간 | “9호”로 재직한 기간 |
| 전문경력관 | | “가”군 20호봉 이하 | “나”군 24호봉 이상 | “나”군 23호봉 이하 | “다”군 25호봉 이상 | “다”군 24호봉 이하 |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4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 직렬 \ 계급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 전 산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공 (기 계) 업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 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

| 직렬 | 계급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공 (전 기) | 업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
| 공 (금 속) | 업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 공 (섬 유) | 업 |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
| 공 (화 공 가 스) | 업 |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
| 공 (지 하 수 원) | 업 |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
| 농 (농 업) | 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
| 농 (축 산) | 업 |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 기사(축산, 식품) |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
| 녹 지 | |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 수 의 | | 수의사 | | |
| 해양 수산 (수 산) |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향로표지, 식품, 수질환경)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향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

| 직렬 \ 계급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해양 수산 (선 박) | 기술사(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 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 보 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 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
| 식 품 위 생 |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
| 의 료 기 술 |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 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
| 의 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 |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간 호 | | 간호사, 조산사 | |
| 보건진료 | | 간호사, 조산사 | |
| 환 경 |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
| 항 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
| 시 설 계 획 (도 시)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

| 계급 직렬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시 설 (토목, 수 도 토 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시 설 (건 축)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시 설 (지 적) |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시 설 (측 지)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
| 시 설 (교 통) |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
| 방송통신 (통신사) |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
| 방송통신 (통신기술) |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
| 방송통신 (전자통신기술) |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
| 위생 | |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
| 토목운영 | |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 |
|-------------------|---|--|
| 건축운영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장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통신운영 |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
| 전기운영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
| 기계운영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 산업기사(운환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
| 화공운영 |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 가스운영 |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
| 선박해양 운영 선박관 운영 | 기술사(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 | | | |
|------|--|---|--|
| 농림운영 | | <p>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p> <p>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p> <p>기능장(산림)</p> | <p>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p> |
| 보건운영 | | <p>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p> <p>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p> | <p>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p> |

2. 연구사

| 직렬 | 계급 | 연구사 |
|-----------------|----|---|
| 공업연구 | |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계, 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p> |
| 농업연구 | | <p>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p> <p>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p> |
| 농업연구 (잡업근층) | | 기술사(생사) |
| 농업연구 (축산) | | <p>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p> <p>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p> <p>수의사</p> |
| 농업연구 (농공) | |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p> |
|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 | <p>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p> <p>영양사, 위생사</p> |
| 녹지연구 | | <p>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p> <p>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p> |
| 해양수산연구 | | <p>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p> |

| 계급 직렬 | 연 구 사 |
|------------------|---|
| 보 건 연 구 |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 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
| 환 경 연 구 |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 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 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
| 시 설 연 구 (토 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 용지질, 교통) |
| 시 설 연 구 (건 축)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

3. 지도사

| 계급 직렬 | 지 도 사 |
|----------|---|
| 농 촌 지 도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 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 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 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 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 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 어 촌 지 도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 경) |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
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삭제

응 시 원 서(원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 | | | | | | | | |
|-------------|----------|-------|------|------------------------------|-----------|-------|-----|-----------------|------------------------------|
| 수입증지 첨부란 | ②주 소 | | | | | | | ③전 화 : 핸드폰 : | |
| | ④경 력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종사) 년 월 일까지 | | | | | |
| | ⑤선 택 과 목 | 선택 1 | 선택 2 | 선택 3 | ⑥ 가 산 기표란 | 자격1 | 자격2 | 자격3 | ⑦취업보호 취업지원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
| | ⑧응 시 계 급 | 급 | | | ⑩성명 | (한 글) | | | ⑫응시자 우무인 |
| | ⑨응 시 직 렌 | (직) | | | | (한 자) | | | |
| ※응시 번호 | | | | ⑪ 주민등록 번호 | | | | | |

간
인

| | | | | | |
|-----------|-------|--------------|------|--|--------------------------------|
| ⑬응 시 계 급 | 급 | 응시원서(부분) | | | ⑱ 사 진 반명함판 (3.5cm×4.5cm) |
| ⑭응 시 직 렌 | (직) | ⑮제 회 시험 | (한글) | | |
| ※응시 번호 | | ⑯성명 | (한자) | | |
| | | ⑰ 주민등록 번호 | | | |

간
인

| | | | | | | |
|---|-----------|-------|---------|------|-------------------|--------------------------------|
| ※ | ⑲응 시 계 급 | 급 | 응 시 표 | | | ⑳ 사 진 반명함판 (3.5cm×4.5cm) |
| | ⑳응 시 직 렌 | (직) | ㉑제 회 시험 | ㉒성 명 | | |
| | ㉑선 택 과 목 | 선택 1 | 선택 2 | 선택 3 | ㉓주민등록 번호 | |
| | ※응시 번호 | | | |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 |

응시원서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⑮, ⑳…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⑩, ⑯, ㉓… 정자로 기재하되, ⑩, ⑯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경력 ④…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⑤…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⑥⑦…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 표)를 할 것.
 ※ √ 표 대상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계급 ⑧, ⑬, ⑲…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⑨, ⑭, ㉑…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 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⑱, ㉒…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12. 우무인 ㉔…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 주의사항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u>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u>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 등 지참 불가)하여야 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u>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u>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 | | | |
|-------------|------------------------------------|-------|------|
| 필 기 적 |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직렬(류) | |
| 감 재 정 | 본인필적 : | 응시번호 | |
| 용 란 | | 성명 | (한글) |
| 주민등록번호 | - | | (한자)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 |
|--------------------|------------------|---|---|
| | 상 | 중 | 하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계 | 개 | 개 | 개 |
| 위 원 서 명 | 성 명 (서 명) | | |

| | | | |
|------------------------|------------------|--------|--|
| 타 위원이 “하” 로 평정한 항목 | 판 정 | 우 수 | |
| | | 보 통 | |
| | | 미 흡 | |
| 타 위원이 “하” 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담 당 확 인 | |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 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 “중” ,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 | | |
|-------------|---------------------------------|-------|------|
| 필 기 적 |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직렬(류) | |
| 감 재 정 용 란 | 본인필적 : | 응시번호 | |
| | | 성명 | (한글)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한자)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 |
|--------------------|-------------|---|---|
| | 상 | 중 | 하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계 | 개 | 개 | 개 |
| 위 원 서 명 | 성 명 (서 명) | | |

| | | | | |
|-------------------------|--|---------|-----|--|
| 타 위원이 “하” 로 평정한 항목 | | 판 정 | 합 격 | |
| 타 위원이 “하” 로 평정한 항목의 개 수 | | | 불합격 | |
| | | 담 당 확 인 | |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 “중” ,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p>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 ----- -----</p> |
| <p>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하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로 위촉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도시환경국장, 6급이상 여성공무원 및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5인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p> | <p>제4조(구성)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5항 각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 5급이상 여성공무원중 2명, 법제7조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10명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2명과 여성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p> |
| <p>③ 생략</p> | <p>③ 현행과 같음</p> |
| <p>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 3.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4.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계획과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p>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0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u>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 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 <p>제10조 삭제</p> |
| <p>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생략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p> | <p>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현행과 같음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p> |
| <p>제12조(응시수수료)①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 -----</p> | <p>제12조(응시수수료)①영제 64조에 따라 ----- -----</p> |
| <p>1. ~ 2. 생략 3. 8급·9급 공무원 및 <u>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u>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p> <p>〈신설〉</p> | <p>1. ~ 2. 현행과 같음 3. 8급·9급 공무원 및 <u>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u>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간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p> |
| <p>제13조(응시결격 사유 등) ① 생략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p> | <p>제13조(응시결격 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간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4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u>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다음</u>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p> <p>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p> <p>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p> <p>제15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p> <p>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p> <p>2.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p> <p>제16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u>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u> ----- ② ~ ③ 생략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u>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u>을 실시하는 경우 ----- ⑤ 생략</p> | <p>제14조(응시연령) ----- -----<u>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u> ----- -----</p> <p>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p> <p>제15조 <u>삭제</u></p> <p>제16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u>제23조제5항 및 제24조에 따라</u> ----- ② ~ ③ <u>현행과 같음</u>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u>경력경쟁임용시험</u>을 실시하는 경우 ----- ⑤ <u>현행과 같음</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7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u>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u> 기산한다.</p> <p>제18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20조(면접시험기준)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7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그 밖의 발전가능성 <p>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과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p> <p>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p> <p>④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p> | <p>제17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 ----- ----- -----<u>최종시험예정일부터</u> 기산한다.</p> <p>제18조(시험위원)①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p> <p>②법제27조2항에 의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③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p> <p>제20조 <u>삭제</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21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p> <p>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u>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u></p> <p>제2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0.2.1></p> <p>② 「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 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23조 <전문개정></p> | <p>제21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면접 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제7호서식] , [별지제8호서식] 에 의거 검정한다.</p> <p>② 현행 제1항과 같음</p> <p>③----- ----- 경력경쟁임용시험 ----- ----- -----</p> <p>제2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u>(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포함한다)</u> ----- ----- -----</p> <p>② ----- -----</p> <p><u>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 23 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 2]와 같다.</p> <p>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p> |

현 행

개 정 안

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⑤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현행 | 개정안 |
|--|---|
| <p>제24조 전문개정</p> <p>제25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 공무원의 특별임용)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 직류의 공무원</p> <p>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8호의 -----</p> <p>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p> <p>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p> | <p>⑥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p> <p>⑦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p> <p>⑧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p> <p>⑨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p> <p>제 24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p> <p>②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p> <p>③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p> <p>제 25조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경력경쟁임용-----</p> <p>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p> <p>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p> <p>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p> <p>② 삭제</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2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u>특별 임용</u>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7조 전문개정</p> | <p>제26조(<u>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u>) ----- ----- <u>경력경쟁임용</u>----- ----- -----</p> <p>제2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연구직공무원 : [별표2]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3]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p> <p>②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p> <p>③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p> <p>④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p> <p>⑤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p> <p>⑥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2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 ② 생략 ③ <신설></p> <p>제32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u>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u></p> <p>② 영 제33조의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의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p> | <p>제2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p> <p>제32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제></p> <p>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p> |
| <p>제33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 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 생략</p> <p>제35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p> | <p>제33조(특별승진임용기준) ----- ----- ----- 특별승진심사대상자----- 1. ~ 5. 현행과 같음</p> <p>제35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 -2항----- -----</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7조(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구청장은---- 동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p> <p>② 생략</p> <p><신설></p> | <p>제37조(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구청장은 -- 동으로 <u>전보임용</u>함을 원칙으로 한다.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p> |

검 토 의 견 서

| | | | |
|---------|--|---|---|
| 관련부서 | 총무과 | | |
| 의안명칭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검토사항 | 검 토 내 용 | 유 | 무 |
| |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 | |
| 검 토 의 견 |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위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 및 안전행정부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 추진에 따라 종전 종이수입증지 발행과 관련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수입증지와 관련된 규제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
- 또한, 현재까지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의 전환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4조)
 -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용어 정의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각종 민원처리 수수료 납부시 전자적 납부방안 도입근거 마련(안 제3조)
 - 민원수수료 납부편의를 위해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확대
-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하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하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함) 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전자수입증지 발행시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
- 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 마련 (안 제6조)
 - 민원처리기기별 수입금 일일결산 서식 마련(별지 제1호~제3호서식)
-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변상책임 규정 신설(안 제7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관련 종전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 삭제
 - 종이수입증지의 발행·인수·보관에 관한 사항
 - 종이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요건·취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전화 : 032-749-7531, FAX : 749-7458, 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 “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 라 한다)을 통해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이내, 세로 3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민원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민원처리기기의 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2의 결손인을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수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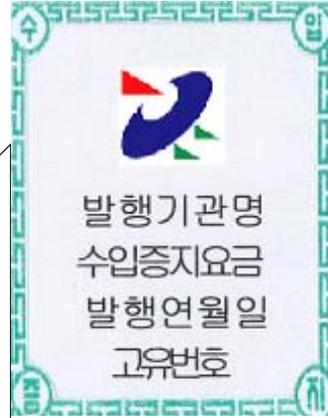
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폐기한다.

[별표 1]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제4조제1항 관련)

(세로 3.0cm이내)



(가로 3.0cm이내)



[별표 2]

결손인 규격 및 표시(제6조제3항 관련)



(지름 3.0cm이내)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요금 계기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
(제6조제2항 관련)

행정기관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기기번호 :

정산일자 : 년 월 일

| | | | |
|--------|--|--|--|
| 결 재 | | | |
| | | | |

[단위 : 건, 원]

| 구 분 | 금액별 발행 내역 | | | | | | | | | | | | 결손 (B) | 실 발행 (A-B) | |
|-----|-----------|-----|-----|-----|-----|-----|-----|-----|-----|-----|-----|-----|-----------|---------------|--|
| | 계 (A) | 100 | 300 | ... | ... | ... | ... | ... | ... | ... | ... | ... | | | |
| 일계 | 건수 | |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누계 | 건수 | |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붙임 : 일일전표 부. 끝.

【별지 제2호서식】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
(제6조제2항 관련)

행정기관명 :
 담당부서명 :
 조회기간 :
 정산일자 : 년 월 일

| | | | |
|--------|--|--|--|
| 결 재 | | | |
| | | | |

[단위 : 건, 원]

| 순 번 | 발급기명 | 발급기IP | 건수합계 | 증명서 종류 | | | | | | | | | | | | | |
|--------|------|-------|-------|--------|--|--|--|--|--|--|--|--|--|--|--|--|--|
| | | | 수수료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검 토 의 견 서

| | | | |
|---------|---|---|---|
| 관련부서 | 세 무 과 | | |
| 의안명칭 |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검토사항 | 검 토 내 용 | 유 | 무 |
| |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 | |
| 검 토 의 견 | | | |
| | | | |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명 : 연수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재무회계과(☎749-7373) 및 도시계획과(☎749-86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12. 1.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35-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인천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 명 칭 : 연수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1,168.30m²
- 사업내용
 - 건축면적(건폐율) : 690.62m²(59.11%)

- 연 면 적(용적률) : 4,102.26m²(196.09%)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6.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연번 | 소재지 | | | 면적(m ²) | | 소유자 | | 비고 |
|----|-----|-------|----|---------------------|---------|-------|-----------------|----|
| | 동명 | 지번 | 지목 | 공부 | 편입 | 이름 | 주소 | |
| 1 | 연수동 | 535-3 | 공 | 5,028.5 | 1,168.3 | 연수구청장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연수구청 재무회계과(3층), 도시계획과(6층)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 - 101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그 입법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 월 1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제정한 바,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2. 2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172 FAX 749-715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 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 토 의 견 서

| | | | |
|---------|--|---|---|
| 관련부서 | 총무과 | | |
| 의안명칭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 검토사항 | 검 토 내 용 | 유 | 무 |
| |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 | |
| 검 토 의 견 |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 - 101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그 입법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 월 1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포함 되어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위임사항을 규정한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2. 2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172 FAX 749-715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 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폐지안

[붙임1]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 -1017호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그 입법취지 및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 월 1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되어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함
- 자진퇴직수당지급에 대한 공무원의 직종 중 고용직공무원을 삭제함.
(안제 1조)
-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 및 운영상 미비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안4조, 5조, 6조,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2. 2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172 FAX 749-715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 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개정안

○ 신·구문대조표

(붙임 1)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
한규칙”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
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제4조 전단 중 “소속기관의 장” 다음에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를 삽입한다.

제5조제1항 중 “직종별” 을 “직무분야별” 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익일” 을 “다음 날” 로 한다.

제6조 중 “직종별” 을 “직무분야별” 로, “다음 각 호의 자를” 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 직종” 을 “해당 직무분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공무원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지방별정직공무원----- ----- ----- -----</p> |
| <p>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 <p>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
| <p>② 생략</p> | <p>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② 현행과 같음.</p> |
| <p>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p> | <p>제4조(지급신청) ----- ----- ----- -----소속기관(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의 장 ----- ----- ----- -----</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p> <p>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일을 기준으로 한다.</p> | <p>제5조(지급심사대상)① ----- ----- 직무분야별 ----- ----- ② ----- ----- ----- ----- 다음 날 -----</p> |
| <p>제6조(지급심사기준)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생략 | <p>제6조(지급심사기준) ----- ----- ----- 직무분야별 ----- ----- 다음 각 호에 ----- 해당하는 사람을 ----- 1. 해당 직무분야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현행과 같음</p>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2014-103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속적인 환경변화 및 행정수요의 대응과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과

부합된 조직개편으로 조직 기능의 극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구신설에 따른 부서장 직급과 분장사무 정비

○ 신 설 : 창조전략기획단

⇒ 안 제3조, 제9조

기구통합에 따른 부서장 직급과 분장사무 정비

○ 통 합 : 교통행정과 + 차량민원과 ⇒ 교통행정과

⇒ 안 제7조

기구직제 이동 및 기구명칭, 부서장 직급변경에 따른 정비

○ 직제이동 : 안전관리과(도시환경국 ⇒ 자치행정국)

⇒ 안 제6조

○ 기구명칭 변경

- 가정복지과 ⇒ 여성아동과 / 지역경제과 ⇒ 경제지원과

⇒ 안 제7조

○ 부서장 직급변경

- 안전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복지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청소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환경보전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 공원녹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선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연수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청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

□ 사무분장표(별표1,2,3,4) 일부내용 수정

⇒ 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 신규(인수) 사무 | 부서이동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 · 홍보미디어실 ⇒ 민원지적과 |
| · 북카페(The Story) 운영 | · 총무과 ⇒ 교육지원과 |
| · 직장보육시설 운영 | · 총무과 ⇒ 가정복지과 |
|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단속 | · 도시계획과 ⇒ 건축과 |
| · 도시농업 및 생태텃밭 | · 환경보전과 ⇒ 지역경제과 |
| · 안전대비 현장순찰 및 관리 | · 안전관리과(신설) |
| · 원도심 지원사업 발굴 및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 · 건축과(신설) |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2. 9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규칙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참고사항】

이 규칙개정안은 2014.11.05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창조전략기획단) 창조전략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재무회계과장,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 중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을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으로 하고, “가정복지과장” 을 “여성아동과장” 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 을 “경제지원과장” 으로 하고,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을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도시환경국) 도시환경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 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 를 “여성아동과” 로 하고, “지역경제과” 를 “경제지원과” 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조같은항제4호, 같은조같은항제6호 중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장” 을 “교통행정과장” 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기획예산실) 생략</p> <p>제4조(감사실) 생략</p> <p>제4조의2(홍보미디어실) 생략</p> <p>제4조의3(규제개혁추진단) 생략</p> <p>제5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재무회계과장,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6조(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7조(도시환경국) 도시환경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장,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 <p>제3조(창조전략기획단) 창조전략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4조(기획예산실) 현행과 같음</p> <p>제5조(감사실)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2(홍보미디어실)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3(규제개혁추진단) 현행과 같음</p> <p>제6조(자치행정국) ----- -----,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재무회계과장, 세무과장은 ----- -----.</p> <p>제7조(복지경제국) ----- -----,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 여성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경제지원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관리과장은 ----- -----.</p> <p>제8조(도시환경국) ----- -----,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부서의 분장사무) 구 분청에 두는 부서의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 | 제9조(부서의 분장사무) 구 분청에 두는 부서의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 |
| 제9조(소장·과장·지소장의 직급)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 송도보건지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0조(소장·과장·지소장의 직급)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 송도보건지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 제10조(분장사무) 보건소 및 송도보건지소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 제11조(분장사무) 보건소 및 송도보건지소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
| 제11조(관장의 직급) 연수청학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2조(관장의 직급) 연수청학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 제12조(분장사무) 관장의 분장 사무는 "별표3"과 같다. | 제13조(분장사무) 관장의 분장 사무는 "별표3"과 같다. |
| 제13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5"와 같다. | 제14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5"와 같다. |
| 제14조(분장사무) 동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4"과 같다. | 제15조(분장사무) 동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4"과 같다. |

구 본청 부서 사무분장표 (제9조 관련)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창조전략 기획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의 핵심사업, 프로젝트 사업 등 정책 및 전략 개발에 관한 사항 (정책개발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전략방안 수립 후 사업부서 배부) 2. 연수관광클러스터 구축 및 추진 3.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유치 및 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방안 수립 후 사업부서 배부) 5. 인천 신항 관련사업 및 배후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기획예산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시사항 관리 6. 위원회 관리 7. 구정백서 및 구정현황 발간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구정의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0. 당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시 확대간부 회의 12. 구청장직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공무국외 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회의(대회)유치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7. 지방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8. 지방이양 사무에 관한 사항 19.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0. 국고 및 시비 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세출예산의 변경(전용, 이체, 이용, 변경 등) 사용에 관한 사항 22.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3. 예산의(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에 관한 사항 24. 교부세, 교부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25.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기획예산실 | 27.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관한 사항 28. 재정전망 분석 및 제도 연구 발전 29. 지방채무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기금 운영 총괄 조정 · 관리 31. 주민재정 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3. 용역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34. 예산절감 대책 및 건전화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35.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6.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7. 지방공기업 등에 관한 사항 38. 구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39. 구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0.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 개정, 폐지, 공포에 관한 사항 41. 고시, 공고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42. 법제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43.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44.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5.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6.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7. 소송사건 처리 결과의 심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8.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49.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50.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51. 구 분청, 산하기관, 단체의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및 결과조치 52.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3. 국정시책 연계 군·구 평가 총괄 관리 54. 주요 대형 프로젝트 점검확인 및 구민불편사항 확인 평가 55. 외부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총괄적인 업무) 56. 7대 당면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감 사 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그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3.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청원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 5. 상급기관 이첩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6.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 7. 민원서류 처리 점검에 관한 사항 8. 감사사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직기강 쇄신 추진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클린신고센터 운영 12.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1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4.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5. 청렴도 관련 업무 16. 청탁등록 센터 운영 17. 물품구매·제조, 용역사업,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18. 계약심사 관련규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9. 원가계산 능력 배양 및 우수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홍보미디어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보기획, 보도, 미디어활동, 통신지원에 관한 사항 2. 구정·시책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3. 구정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4. 한국지역진흥재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언론 구청장 인터뷰 및 홍보에 관한 부서요구사항 검토 6.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보존 관리, 배부 7. 구정 홍보물(화보·소식지·영상물·뉴스 제작 등) 발행 배부 8. 홍보·미디어 메커니즘 및 시스템에 관한 사항 9. 구의 상징(CI, BI)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고시, 시정 홍보용 게시판 관리 11. 신문 및 방송 보도와 관련한 홍보에 관한 사항 12. 국·시정 및 구정 홍보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13. 스튜디오, 인터넷방송실, 구정홍보실, VTR실, 사진실, 기자실 운영 14. 국어책임관제 운영 및 국어사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15. 인터넷 구정홍보계획의 총괄 16. 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사항 유지·관리 18.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에 관한사항 19.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0.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행정정보시스템(새울행정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전산장비(PC, 프린터, 스캐너 등) 도입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23. 주전산기(공통기반서버, KLIS서버 등) 및 각종서버 운영에 관한 사항 24. 구내 정보통신망(LAN, WAN구간) 회선 관리에 관한 사항 25. 네트워크장비(백본, 라우터 등)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27. 정보보호시스템(VPN, F/W, IPS, 유해차단 등) 구축 및 운영관리 28. U-컨텐츠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29. 무선인터넷(Wifi)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정품 SW 및 우수정보시스템 보급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홍보미디어실 | 31. 구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32. 통계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3. 통계자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34. 각종 통계조사(인구주택, 농림어업, 사업체 등)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p>규제개혁 추진단</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2.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추진 3.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4.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5.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 6.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7.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총 무 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식행사, 의전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날 지원 및 구민상 포상에 관한 사항 3. 당직, 직원복무 및 청사방호(청원경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 6. 직원복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녀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8.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9.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경일 등 태극기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 14. 직장 민방위 및 자체 예비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직원 및 간부공무원 비상연락(소집)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노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상용직노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22. 청원경찰 임용에 관한 사항 23.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24.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5.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현원관리에 관한 사항 26.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에 관한 사항 27.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공무원 시책교육 포함)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총 무 과 | 28. 공무원 임용시험 요구, 특별임용 및 전직시험 관련 사항 29. 공무원증 발급,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0. 공무원 건강진단 및 4대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31. 공무원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32.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 33. 공무원표창에 관한 사항 34.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5.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3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37. 사회단체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38.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9.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구 행정실적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41.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 42.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3. 새마을 금고 육성에 관한 사항 44. 시장 및 구청장 초도방문에 관한 사항 45. 여론 및 동향파악에 관한 사항 46. 창안 및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7. 주요시책 및 당면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48. 명절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49. 북한이탈주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0.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1.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 5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53.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54. 행정구역의 위치·명칭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55. 동 주민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6.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총 무 과 | 57.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8. 반상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9. 통·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60.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61.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62.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 63. 인권보장 및 증진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64. 그 밖에 자치행정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안전관리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4. 재난대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 6.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난대비물자·자원·장비과약 및 재난단계 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9. 인적재난의 사고수습에 관한 사항 10. 재난예방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 총괄 11. 재난예방을 위한 특별·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도 12.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3. 자연재난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4. 재해복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방재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16. 재해방지를 위한 출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17.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풍수해보험 가입·운영에 관한 사항 20.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재해지도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2. 재해발생예상시설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3.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 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5. 구 산하기관(부서)의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26.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27.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8.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안전관리과 | 29.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0. 안전점검의 날 등 행사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31.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재난예방행정에 관한 사항 33. 방범취약지 야간 순찰에 관한 사항 34.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35. 재해구호 물자의 출납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37.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38. 인적·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39.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 40. 재난안전교육 총괄 및 훈련, 홍보 41. 안전대비 현장순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민방위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3.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4.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45. 핵 및 화생방 방어에 관한 사항 46. 민방위 및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47. 충무계획 작성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48.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49. 인력동원 실제 훈련에 관한 사항 50. 민방위대원 교육 및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51. 민방위 재난 통제에 관한 사항 52.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3. 주민신고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54. 민방위대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55. 민방위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56. 공익근무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57. 그 밖에 민방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안전관리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8.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종합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9.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0. 행정정보통신시스템(교환기, 인터넷방송시스템, 전광판, 콜센터 등)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61. 방송시설 운영 및 행사(방송)지원에 관한 사항 62.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63.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에 관한 사항 64.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65. 공공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독 업무(신축, 증축, 개축, 보수 등)에 관한 사항(정보통신분야) 66. U-City건설 종합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7. Smart 연수 건설(U-City 건설 등)에 관한 사항 68. U-도시통합운영센터 건설에 관한 사항 69.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0. 정보통신망(유선, 무선, 센서망 등)고도화에 관한 사항 71.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2. U-Service 개발 및 서비스지원에 관한 사항 73. CCTV설치 종합계획수립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교육지원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지역교육사업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업무 지원 4. 지역우수자 전형 지원에 관한 사항 5. 취학사무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 표창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복지우선지역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3.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4.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7.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19.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0.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북카페(The Story)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관련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문화체육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수금요예술무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연수구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7. 연수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공원의 야외무대 운영에 관한사항 9.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여행업에 관한 제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1. 관광편의시설업 제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관광숙박업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사업취소 제외) 13.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4. 종합휴양업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사업취소 제외) 15. 공연장 등록 및 공연에 관한 사항 16.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7. 영화관 등록 및 상영에 관한 사항 18. 출판사 및 인쇄등록에 관한 사항 19.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0.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용담공원 내 씨름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스포츠바우처 사업 일반에 대한 사항 23. 생활체육 진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의 신고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의 허가·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한 영업의 신고·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재무회계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문서 심사 및 구 사업소 등 회계문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계관리 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원천징수금 징수 불입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6. 부가가치세 불입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관한 사항 7. 국비, 시비 정리에 관한 사항 8. 회계관계 직인 보관에 관한 사항 9. 회계관계 증빙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 10. 구금고의 세출분야 감독에 관한 사항 11.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12. 급여압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3.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14.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의 영선관리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독에 관한 업무 18. 구청사 및 동청사 청소에 관한 사항 19. 구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송죽원 포함) 20. 구 청사 소방에 관한 사항 21. 공용의 청사,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등에 관한 설계 및 공사시공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경로당 포함) 22. 대강당·대회의실·예식장 대관에 관한 사항(사용신청(승인) 및 사용료부과(징수)) 23. 사무실 배치·조정에 관한 사항 24.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세 무 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서 전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운영평가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납세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세정자료의 조사와 세표작성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에 관한 사항 9.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징수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1.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체납관리 및 독촉고지에 관한 사항 12.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과오납금 및 가산금조정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교부청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징수분야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수입금 출납사무 및 과오납금 환불에 관한 사항 17.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18.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9. 구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0. 세무전산화 추진운영 21.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2.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23.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4.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 조정에 관한 사항 25.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6. 토지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27. 토지 잠정등급 발급에 관한 사항 28. 부동산 취득세 수납사항 대사에 관한 사항 29.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세 무 과 | 30.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징수촉탁서 처리 및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31.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재산압류 및 공매에 관한 사항 32.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한 사항 33. 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에 대한 사항 34. 개별주택가격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5. 건물현황 및 주변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6. 전산입력 및 시가산정에 관한 사항 37.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개별 통지에 관한 사항 38. 개별주택가격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재 산정 등에 관한 사항 39. 지방소득세 부과·징수·환급 40.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41. 지방소득세 대장관리·전산시스템 운영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p>민원지적과</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문서 수발·분류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민원사무(처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민원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사항 8.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원(방문, 전화, 인터넷)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0. 어디서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1. “민원 24” 처리에 관한 사항 12. 민원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3. 친절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외부고객만족(CS) 행정에 관한 사항 15. 미추홀 콜센터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행정정보공개 접수 통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20. 행정간행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행정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록물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23. 종합문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24. 기록물 관리 업무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 26.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28.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29. 외국인 관리에 관한 사항 30. 결격사유조회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p>민원지적과</p> | <p>31. 인감증명관리에 관한 사항 32.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33.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34.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 35.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6.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파악에 관한 사항 37. 개발부담금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38.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9.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 40. 개별공시지가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1. 개별공시지가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42.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43.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4. 지적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5. 이동지 검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46. KLIS시스템 토지이동정리 47.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48. 지적복구에 관한 사항 49.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0. 지적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51. 지적기준점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2. 축척변경 사업에 관한 사항 53.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에 관한 사항 54.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관한 사항 55. 지적 및 측량에 관한 사항 5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관한 사항 5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58.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리 59.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p>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p>민원지적과</p> | <p>60. 새주소 정착 및 활용 홍보</p> <p>61.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p> <p>62. 부동산거래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p> <p>63. 부동산거래 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p> <p>64. 신고서 확인 및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사항</p> <p>65. 가격적정서 진단, 세부자료입력에 관한 사항</p> <p>66. 부동산 계약서 검인업무에 관한 사항</p> <p>67.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업무에 관한 사항</p> <p>68. 지적공부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p> <p>69. 지적전산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업무에 관한 사항</p> <p>70.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p> <p>71. 도시계획도면 관리에 관한 사항</p> <p>72. 토지대장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사항</p> <p>73.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p> <p>74.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p> <p>75.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사항</p> <p>76.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p> <p>77. 토지거래계약허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p> <p>78. 토지거래계약허가 소송수행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관한 사항</p> <p>79.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p> <p>80.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사항</p> <p>81.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p> <p>82.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p> <p>83. 국가소송(미등기 토지)에 관한 사항</p> <p>84. 지적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조상땅 찾아주기)</p> <p>85.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p> <p>86. 부동산거래 과태료 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p>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복지정책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 시책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가보훈단체지원·협력 및 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 및 결산 총괄 9. 사회복지기금 중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 법인 관리 및 지도 감독 11.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에 관한 사항 13. 행려자·사망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6.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에 관한 사항 17.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변동·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8.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19. 이웃돕기 지원 및 관리·후원 결연에 관한 사항 20.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1. 민관협력복지사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역사회투자사업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리 25. 연수품앗이 운영 및 관리 26. 사례관리 운영 및 자원에 관한 사항 27.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8.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29.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 연계 30. 그 밖에 복지경제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사회복지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연간 조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급여지급 관리 전반 사항 3.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에 따른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4.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5.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존주택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8. 차상위계층 등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9. 차상위계층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항 11.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3.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14. 의료급여 사후관리(본인부담금 및 환급금, 환수결정내역, 투여기간 관리,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6.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운영 17. 의료급여 사례 관리 18. 의료급여 제한 여부 조사 및 상해요인, 중복청구 조사 19.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관리 20.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관리 21.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22. 장애인보장구 지원 관리 23.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4.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허가·운영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5.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약에 관한 사항 28.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사회복지과 | 2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30. 장애인 실명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31.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2. 장애인 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복지카드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노인복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6.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37.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38.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항 39.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0.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1.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2.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3.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5.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보수에 관한 사항 46.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7. 노인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48. 노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9. 경로효친사상 양양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50.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51. 장사 등에 관한 사항 52. 외국인묘지 처리(매장·개장·유실 등)에 관한 사항 53. 노인 일자리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54.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5.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6.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7. 자활사업 프로그램 실시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사회복지과 | 58. 자활공동체 인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9. 희망키움통장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60.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1.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2. 차상위 일자리지원 사업 63. 자활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64. 희망리본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사항 65.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7.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68.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가정복지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여성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7. 여성권익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8.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9. 다문화가족 지원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가정 지원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2.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에 관한 사항 13. 연수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기가족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17. 출산장려금 지원 및 다자녀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18.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19. 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 보육시설 인가에 관한 사항 21.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22.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급여지급 사항 23.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구립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5. 직장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6.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7.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8.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아동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가정복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급여 지급 사항 31. 시소와 그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에 관한 사항 34.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5.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6.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신고처리 및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7. 모범 청소년 발굴 표창에 관한 사항 38.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39. 청소년 동아리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40. 어려운 청소년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41.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42. 청소년보호법 관련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3. 청소년보호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4.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관리에 관한 사항 45.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46.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47.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관한 사항 48.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9. 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0.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51. 드림스타트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리 52. 드림스타트 사업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 53. 드림스타트 사업 서비스 조정·연계 및 개발 54. 드림스타트 사업수행기관 및 협력·후원기관 선정 및 관리 55.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6.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7. 드림스타트 사업 민간 전문인력 관리 및 슈퍼비전 체계 운영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지역경제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출 진흥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지역산품 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6. 지역물가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7.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업무 8.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 세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어선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 11.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농업행정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농업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4. 양정에 관한 사항 15. 원예 및 특용작물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16. 농림 축 수산물 생산지원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7.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8. 친환경 생태텃밭 및 옥상농업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9.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식량작물 생산 장려에 관한 사항 21. 농작물 병충해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농지원부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 23.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24. 농지타용도 일시 사용에 관한 사항 25.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 26. 자경증명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27.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8.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어선표지판 교부 신청에 관한 사항 30. 어업허가 신청 및 어업폐지 신고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지역경제과 | 31. 어선등록말소 신청 및 어업휴업 신고에 관한 사항 32.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33. 선박원부등본 교부에 관한 사항 34.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 35. 어선 건·개조 발주에 관한 사항 36. 낚시어업신고에 관한 사항 37. 축산업 등록제에 관한 사항 38. 축산진흥 지방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9.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40. 축산물 등급제 지도에 관한 사항 41. 농·축·수산물 직거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2. 축산물보관업 허가에 관한 사항 43. 축산물 운반업, 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44. 축산식품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45. 축산물 보관업, 운반업, 판매업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46.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47. 유기동물 보호·처리에 관한 사항 48.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49. 경지이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0. 농업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51.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52. 농가부업 장려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3.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54. 수출농식품 지원에 관한 사항 55. 시장개설 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 56. 가격표시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 58. 대형 농·수산물 유통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9. 농·수·축산물 가격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지역경제과 | 60. 농·수·축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 61.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62. 대부업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3. 부정경쟁 방지업무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4. 복권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5. 개인서비스업 품목가격조사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66. 개인서비스업 조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67.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8. 상권활성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9. 지역중소상인 지원에 관한 사항 70. 상점가 진흥조합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71. 유통상생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7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관한 사항 74. 석유사업법에 관한 사항 75.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에 관한 사항 76. 석유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7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임에 관한 사항 78.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9. 계량기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80.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81. 기계 및 섬유공업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82. 지역 상공단체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83.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4. 민속공예산업 육성 실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85. 우수토산품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6. 공예품 등 전문 생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87. 토산품 등 생산기술 전승자의 발굴 보호에 관한 사항 88. 지방공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지역경제과 | <p>89. 공장등록 및 제증명에 관한 사항</p> <p>90.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p> <p>91.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p> <p>92.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유치에 관한 사항</p> <p>93. 그 밖에 상공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p> <p>94. 가스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95. 가스안전점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p> <p>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p> <p>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관한 사항</p> <p>98.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사항</p> <p>99. 도시가스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p> <p>10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p> <p>101.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p> <p>10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p> <p>103.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및 원산지표시관련 업무</p> <p>10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항</p> <p>가. 개선·과기·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표교환 환불 수리 등의 명령</p> <p>나. 보고 및 검사 등</p> <p>다. 과태료 부과·징수</p> <p>105. 중소기업 창업지도에 관한 사항</p> <p>106. 승강기에 관한 사항</p> <p>10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임에 관한 사항</p> <p>108.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p> <p>109. 공공기관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관리</p> <p>110. 유료광고 조례에 관한 사항</p> <p>111. 담배 도매인 지정 및 폐업에 관한 사항</p> <p>112. 노·사·정 협의회에 관한 사항</p> <p>113. 노동행정의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p>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지역경제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4. 노동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15.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6. 노동대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7. 중소기업기본법에 관한 사항 118. 창업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9.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수요과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0.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21. 당해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122.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123.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24. 지방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일자리창출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시책 개발 3. 지역브랜드 일자리 창출 시책 개발 4.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직업훈련 개발에 관한 사항 6. 기업연계형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7. 연수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한 사항 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1. 고용 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 12.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13.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인·구직의 개척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5. 구인·구직 등록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6. 구인·구직 만남의 날(취업박람회)에 관한 사항 17.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단속에 관한 사항 18. 직업안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9.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20. 직업소개 사업자 및 업무보조원의 교양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1.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2. 사회적기업 교육 및 홍보사업 23.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사업 24.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25. 협동조합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26. 마을기업 육성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7. 마을기업 육성사업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청소행정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로환경미화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소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종량제에 관한 사항 8.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9. 폐기물적환장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료 및 전반적인 관련 사항 11.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 및 대행료 지급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14.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에 관한 사항 15.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기본적 처리증명 16.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7.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18.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20. 폐기물 처리신고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재활용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 23.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5. 1회용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6.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27.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28. 재활용센터 관리 29. 빈용기보증금제도 관련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청소행정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31. 환경(청소)순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2.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33. 처리업체 지도점검·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위생관리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위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업소(이·미용, 숙박, 목욕 등)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관련업(위생처리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신고 및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중·식품위생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식품위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식품위생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11. 유흥 및 단란주점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2.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13. 식품접객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4. 식품관련업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15.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6. 식품품목보고(변경포함)에 관한 사항 17. 식품소분업·판매업·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8.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9.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0. 식품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 21. 조리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22. 식품동원(충무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23. 음식문화 개선사업(특색음식거리 지정, 맛있는 집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4. 좋은 식단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5.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6.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위생감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8. 공중·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위생관리과 | 29. 공중·식품 무허가(무신고)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0. 지도단속 관련 신고, 진정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1. 식품소분·판매업소(자동판매기, 기타식품판매업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2. 공중위생업소 등급선정에 관한 사항 33.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공중·식품분야 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 35. 공중·식품 위생업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6. 공중·식품 위생업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7.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삭제) 38.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9. 유통식품관리(식품제조가공업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0. 부정불량식품 단속·수거·압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1. 집단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1399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43.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4.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6.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7.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8. 고열량, 저영양 식품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49.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0. 유전자재조합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압류·폐기 등에 관한 사항 51.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 및 이물 민원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52. 식품생산자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 53.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지정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54. 식품제조업소 위생등급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55.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p>건 설 과</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행정의 종합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중기정비업체)에 관한 사항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약, 지출에 관한 사항 12. 노점상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3.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도로 및 건설공사 계획수립 (도로폭 20미터 이하)에 관한 사항 15. 토목, 건설공사의 시행 및 유지관리(도로폭 20미터 이하)에 관한 사항 16. 20미터 이하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에 관한 사항 17. 20미터 이하 도로 노면 및 전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로의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로의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20. GIS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 22.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3. 지하철도(보도포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보행자전용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7. 공동구 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p>건 설 과</p> | <p>29. 공동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0. 도로 및 가로정비(도로제설포함)에 관한 사항 31.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3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사설계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3. 공공하수도설치, 개축 및 수선공사에 관한 사항 34.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5. 하수종별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6. 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37. 하수사용 계량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38.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집계에 관한 사항 39.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40.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1.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42.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3.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4.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도로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5.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6. 자전거 행사에 관한 사항 47. 자전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8.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9. 무단방치자전거 정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0.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1. 도로조명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2. 지하철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3. 보도육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4.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55.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사항 56.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7. 도시환경국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p>건 축 과</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등기필 정리에 관한 사항 2.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말소 및 공용발급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포함) 5.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포함) 6.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포함) 7. 항측 업무에 관한 사항 8. 위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포함) 9.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11. 건축행정의 종합조정제에 관한 사항 12.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포함) 13. 건축시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축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17. 용벽 및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 18.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주택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사항 20. 시설(건물, 토지)동원에 관한 사항 21.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22.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3.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2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6.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27.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28. 공동주택 계약업무 관련 법률자문 29. 공동주택 내 공사관련 사업비 적정성 자문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p>건 축 과</p> | <p>30. 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31. 임대주택 분양전환허가 및 매각신고에 관한사항 32.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3.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4. 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35.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 3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점검 사항 37.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38.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9. 간단한 도면 대행 서비스에 관한 사항 40.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정정에 관한 사항 41. 공동주택 하자보수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 42. 아파트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관한 사항 43. 원도심 지원사업 발굴 및 저층주거지 관리사업</p>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도시계획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심의에 관한 사항 8.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9.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 10.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물 위반에 관한 사항 13.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4. 도시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7.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8.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19.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포함) 20.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2.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3. 환지 증명원(예정지, 확정) 발급에 관한 사항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25.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6.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행위허가, 물건적치 등)단속 및 관리 27. 기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28. 온천 개발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환경보전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의견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내의토지이용 및 시설제한에 관한 사항 4.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유공자포상계획수립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0. 휘발성 유기오염물질·기타수질오염원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관리대상기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대기 배출원 및 전국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13.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4. 배출업소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15. 한강중역권 물관리에 관한 사항 16.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내의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7. 유해화학물질 영업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8. 저수조청소업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9. 중수도 등에 관한 사항 20. 환경기술인 및 다중이용시설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 21. 습지관리보호지역에 관한 사항(내륙·연안 포함) 22. 오존주의보 발령 및 해제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23.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 24. 야생동·식물 보호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25. 정부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26.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7.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일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8.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9.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 실천·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p>환경보전과</p> | <p>30. 저탄소 녹색통장(탄소포인트)갯기 추진에 관한 사항</p> <p>31.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녹색생활 업무에 관한 사항</p> <p>32.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등 인벤토리 구축에 관한 사항</p> <p>33. 녹색생활 확산 및 시민실천 정착화 업무에 관한 사항</p> <p>34.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p> <p>35.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 본격추진에 관한 사항</p> <p>36.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p> <p>37.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38.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부과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p> <p>39. 절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p> <p>40. 무허가신고 배출업소 행정처분 사항</p> <p>41.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42.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43. 생활소음, 생활악취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p> <p>44.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p> <p>45.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p> <p>46.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p> <p>47. 자동차정밀검사 체납 과태료 징수·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p> <p>48. 유해화학물질등록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49.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50. 저수조 청소업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p> <p>51. 휘발성 유기오염물질·기타수질오염원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52.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관리대상기기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53. 다중이용시설 검사에 관한 사항</p> <p>54.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p> <p>55. 환경오염신고 “128 환경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p> <p>56. 환경오염사고 대비에 관한 사항</p>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환경보전과 | 57. 악취, 먼지, 오존 등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58. 환경사범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59. 대기·수질 TMS구축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60. 민간 환경감시단 업무에 관한 사항 61.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사항 62. 환경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3. 폐석면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4. 석면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5. 무인악취포집기 운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6.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67.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8.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9.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1.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에 관한 사항 72.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7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4.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7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76.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77. GCF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공원녹지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영림계획의 인가, 변경명령 및 사업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대책 및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산림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 6.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임목벌채 등 산림훼손 허가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8. 산지전용 허가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9.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0. 입산신고에 관한 사항 11. 지역 공동산화경방활동에 관한 사항 12.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3. 녹지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가로수 식재 보호에 관한 사항 15.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16. 도시녹화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7. 구 단위 도시녹화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도시녹화 추진 기술지도 및 묘목, 자재 등 확보 공급에 관한 사항 19. 산림동원에 관한 사항 20. 보행자전용도로의 수목과 시설물에 관한 사항 21. 미관광장의 수목과 시설물에 관한 사항 22. 시민참여 녹화사업 및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23. 마을쉼터 조성 및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에 관한 사항 24. 학교 주변 녹화추진에 관한 사항 25. 교통섬 녹화 및 가로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26. 도시림 조성 및 관리 27.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28.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의 위탁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공원녹지과 | <p>29. 도시공원, 녹지의 사용 및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p> <p>30. 도시공원 및 녹지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및 관리위탁료 징수에 관한 사항</p> <p>31.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p> <p>32. 도시공원 및 녹지 협의 관련 사항</p> <p>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자 처분에 관한 사항 (단, 미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내 불법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의해 처리 되어야할 부분은 제외한다.)</p> <p>34. 도시공원, 녹지 GIS(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p> <p>35.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에 관한사항</p> <p>36. 공원 재조성(리모델링)에 관한 사항</p> <p>37. 공원내 체육시설의 설치·개보수(증축)·변경, 리모델링,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p> <p>38. 도시공원, 녹지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p> <p>39. 미조성 도시공원, 녹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p> <p>40. 미조성 도시공원, 녹지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p> <p>41.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도시자연공원 제외)</p> <p>42.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사항</p> <p>43.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p> <p>44.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p> <p>4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p> <p>46.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 작성 및 관리</p> <p>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p> <p>48. 도시공원 및 녹지 공원 등 전기업무에 전반에 관한 사항</p> <p>49.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p> <p>5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화장실 관리</p> <p>51. 도시공원 및 녹지내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p>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공원녹지과 | 52. 소나무류의 이동에 따른 허가와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53. 연수둘레길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4. 등산로 정비·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55. 산림의 생태적 복원에 관한 사항 56.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 57. 보안림의 지정, 지정해제, 지정의 고시, 관리에 관한 사항 58. 도시계획시설(공원: 묘지공원 제외, 녹지, 일반·경관 광장)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 59.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6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기준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신규로 증가된 근린공원 종합계획 및 공원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61. 아암도 해안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교통행정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2. 교통체계관리(TSM) 추진 3. 교통관련 소규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영(노상·노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공영주차장 설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1.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 12.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도시계획시설 중 주차장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4.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따른 건축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관한 사항 17.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8.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9.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20. 차 없는 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22.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사항 2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24. 교통불편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5.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26.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27.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교통행정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 점검 및 정비명령 등(사업용자동차 지도점검 제외) 31.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단속 및 조치(고발,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 32. 법령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33. 불법개조 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 및 고발에 관한 사항 34.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 및 가입사실 증명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35.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이한 의견 제출 통보 및 과태료 감경 부과에 관한 사항 36.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37. 자동차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38.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관리 39. Green Parking 사업에 관한 사항 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및 검찰 송치에 관한 사항 41. 무단방치 자동차 범칙금 및 검찰 송치에 관한 사항 42.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43.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4. 시간제 계약직·교통서포터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5. 고정형·차량형 CCTV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6. 온라인 교통불편민원 상담 47. 주정차위반 단속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48. 견인사업소 지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9.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50. 자동차 등록 원부 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 51. 신규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 52. 자동차등록 번호판 탈·부착 및 봉인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p>교통행정과</p> | <p>53. 자동차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54.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 55. 자동차등록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56. 자동차 검사, 자동차 점검에 관한 사항 57.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8. 자동차 멸실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59. 자동차 변경등록 · 이전등록 · 말소등록에 관한 사항 60. 자동차 신규등록 61. 자동차 등록증 교부 62. 자동차 경정등록 63. 자동차 저당권 변경 · 등록 · 말소 64.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5. 자동차 검사 명령에 관한 사항 66. 이륜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67.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68. (과년도) 체납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9. (과년도) 체납 주정차과태료 과태료 징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70. (과년도) 체납 검사지연 등록지연 과태료 징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71. 위 68. 69. 70.호와 관련한 압류·해제 72. 자동차 과태료 관련 압류 및 해제등록</p> |

【별표 2】 <개정 2013.2.28, 2013.7.31, 2014.3.3>

직속기관(보건소) 사무분장표 (제11조 관련)

| 부서명 | | 분 장 사 무 |
|-----|-------|--|
| 보건소 | 보건행정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인관리 2. 당직근무 및 소내의 복무관리 3.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임계약직 고용에 관한 사항 5. 도시보건지소에 관한 사항 6. 청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 공사도급, 용역, 물품계약에 관한 사항 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일상경비 교부에 관한 사항 13. 보건소 대강당, 프로그램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관한 사항 15. 전임계약직,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증빙서류 관리에 관한 사항 17. 보건통합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8. 차량 및 전산 관리 19. 민원서류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20. 보건사업 통합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21. 각종문서 수발 및 분류에 관한 사항 22.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23. 일반진료(양·한방, 방사선,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24. 진료비청구 및 기타 수가의 징수 25. 노인장기요양보험청구에 관한 사항 26. 방사선 검사에 관한 사항(골다공증, X-Ray 등) 27.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8. 물리치료사업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 분 장 사 무 |
|-----|-------|---|
| 보건소 | 보건행정과 | 29. 휠체어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30. 의료법에 의한 개설허가(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1. 약사법에 의한 개설등록(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33.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4.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신고(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6.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38. 지역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등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39. 명절연휴 진료대책에 관한 사항 40.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41. 구강보건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2. 치과진료에 관한 사항 43. 노인의치보철사업에 관한 사항 44.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5.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6. 소독업소 신고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7. 감염병관리대책수립 및 예방 홍보 사업 48. 레지오넬라증 관리에 관한 사항 49.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대책 수립 50. 에이즈 등 성매개감염병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1. 해외유입감염병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SARS, AI 등) 52. 표본감시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53. 방역소독업무에 관한 사항 54. 방역 소독 약품 및 기자재 관리 55.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 56. 감염병 등 검사에 관한 사항 57. 식중독 검사에 관한 사항 58. 집단급식시설 보균검사에 관한 사항 59. 결핵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 60.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관리에 관한 사항 61. 한센병 관리에 관한 사항 62. 생화학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 분 장 사 무 |
|-----|-------|---|
| 보건소 | 건강증진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수립에 관한사항 2. 일상경비 지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일상경비 증빙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 5.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6.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문서수발 및 분류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도시에 관한 업무 11. 건강증진서비스분야 ISO9001인증에 관한 사항 12. 건강관리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에 관한사항 14.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체력측정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체력단련실 및 운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7. 연수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18.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20. 간접흡연예방에 관한 사항 21. 금연법령이행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2. 금연구역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23. 흡연자의 금연지원에 관한 사항 24.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의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25.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6. 알코올 사회복귀이용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7. 알코올 사회복귀주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 분 장 사 무 |
|-----|-------|---|
| 보건소 | 건강증진과 | 28.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9.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0.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1.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2. 자살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3. 치매보호센터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4.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5. 치매조기검진관리에 관한 사항 36.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관한 사항 37. 치매통합관리센터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8. 임신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9. 난임부부 관리에 관한 사항 40.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 41. 임신부 및 영유아 교육에 관한 사항 42.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 43.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44. 영유아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4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46. 산후조리원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7.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사항 48.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9.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50. 선천성대사이상질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51.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 52. 신생아 난청조기검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3.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에 관한사항 54.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 분 장 사 무 |
|-----|-------|--|
| 보건소 | 건강증진과 | 55. 심·뇌혈관 질환 조기발견사업에 관한 사항 56. 심·뇌혈관 질환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57.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상설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58.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신규등록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59. 방문보건대상자 보건소 내·외 연계서비스 제공관련 사항 60.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61. 재가암 관리에 관한 사항 62.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63.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관한 사항 6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5. 암환자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66.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사항 67.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68. 성인 B형간염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6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사항 70.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71. 만 12세 아동 일본뇌염 및 Td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72.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에 관한 사항 73.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4.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 분 장 사 무 |
|-------------|----------------------------|--|
| 보 건 소 | 송 도 보 건 지 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2. 당직근무명령 및 복무관리 3. 예산·회계관리 4. 차량 및 청사관리 5. 의료장비 등 비품 및 소모품 관리 6. 예방접종 예진 및 만성질환자 1차 진료 7. 만성질환사업에 관한 사항 8.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10. 물리치료 및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 12.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13.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4. 감염병 및 성인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5. 보건통계 및 교육 홍보 16.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건강증진사업 |

【별표 3】 <개정 2013.2.28, 2013.7.31, 2014.3.3>

사업소 사무 분장표(제13조 관련)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연수 청학도서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발전 계획 및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개발·기획·운영 나. 도서관 견학 및 이용교육 다. 독서대회, 전시회, 강연회 운영 등 5. 타 도서관 교류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장서 및 이용 통계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자원봉사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0. 보조인력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예산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 업무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시설 및 재산·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서관 시설물 대관에 관한 사항 15. 자료 선정(구입, 기증) 및 수집, 정리에 관한 사항 16. 자료의 제적 및 폐기, 이관에 관한 사항 17. 자료의 수리 및 배가, 장서점검에 관한 사항 18. 자료의 대출 및 반납에 관한 사항 19. 신착·희망·예약·연체·분실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연수 청학도서관 | 20. 도서 상호대차 및 순회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21. 통합도서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2. 독서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4. 도서관 운영 관련 장비 및 SW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도서관 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6. 도서관 전산 보안에 관한 사항 27. 도서관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28. 도서관 당직근무 및 도서관 내의 복무관리 29. 도서관관련 사무의 보조금 교부 및 결정통지, 감독 등에 관한 사항 30.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에 관한 사항 31.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 32. 도서관 청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3. 도서관 예산운영, 공사도급, 운영, 물품계약에 관한 사항 34. 무기계약 및 시간제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관한 사항 35. 도서관 소관 차량 및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36.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변경등록·폐관에 관한 사항 |

【별표 4】 <개정 2013.2.28, 2013.7.31>

하부기관(동 주민센터) 사무분장표 (제15조 관련)

| 부서명 | 분 장 사 무 |
|--------|---|
| 동 주민센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관리 및 당직에 관한 사항 5. 통·반 구역확정 및 통·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증명신고 사실 확인 및 증명의 경유에 관한 사항 11.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2. 동 재산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법령 기타 공지사항의 공시 및 동민 여론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4. 취학아동 사무에 관한 사항 15.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16.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한부모 복지에 관한 사항 17. 환경미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8.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관한 사항 19.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관한 사항 20. 각종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1.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 및 지시사항 |

【별표 5】

동장 직렬 및 직명 (제14조 관련)

| 직 명 | 직 렬 |
|-------|---------------------------------|
| 옥련1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옥련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
| 선학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연수1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
| 연수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 연수3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 청학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동춘1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
| 동춘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
| 동춘3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
| 송도1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
| 송도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
| 송도3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

검 토 의 견 서

| | | | |
|---------|--|---|---|
| 관련부서 | 기획예산실 | | |
| 의안명칭 |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검토사항 | 검 토 내 용 | 유 | 무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 | |
| 검 토 의 견 |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 제 명 | 주 요 내 용 |
|--|---|
| <p>인천광역시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p> |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민과의 약속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관한 규정 내용을 정비하여 공약사항 이행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이행평가단 업무 추가(안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사항 실천계획 변경 검토 및 자문 기능 ○ 공약이행평가단 단원의 구성 인원 수 확대(안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이행평가단 단원 구성 15명 → 20명으로 확대 ○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변경(안 제7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단의 의견을 들어 반영 후 변경 |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4. 12. 8.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59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청장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청장공약사항 관리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공약이행평가단 운영) ① 추진단장은 공약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매니페스토 전문가·사회단체·대학교수·일반주민 등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은 평가단 회의를 주재한다.

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변경 관련 검토 및 자문
2.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자문 등
3. 공약사항 추진내용 점검 및 추진이 미흡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건의 등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토한 후 변경한다”를 “검토하고, 평가단의 검토자문을 거친 후 변경한다”로 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종전의 제13조는 삭제하고,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3까지를 각각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해 시행중인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중인 것으로 본다.

| 현 행 | 개 정 안 |
|--|---|
| <p><u>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생략)</u>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은 추진단에서 계획변경의 불가피성을 검토한 후 변경한다.</p> <p><u>제7조~제12조 (생략)</u></p> <p><u>제13조(공약이행평가단 운영) ① 추진</u> <u>단장은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객관적 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u> ② 공약이행평가단은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매니페스토 전문가·사회단체·대학교수·일반주민 등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은 평가단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행평가단은 연 1회 이상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추진단장은 이행평가단의 운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p> <p><u>제13조의2(생략)</u></p> <p><u>제13조의3(생략)</u></p> | <p><u>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생략)</u>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은 추진단에서 계획변경의 불가피성을 검토하고, <u>평가단의 검토자문을 거친 후 변경한다.</u></p> <p><u>제8조~제13조 (생략)</u></p> <p><u>삭제</u></p> <p><u>제5조의2(생략)</u></p> <p><u>제5조의3(생략)</u></p> |